

## 분 배 계 획

### 1.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조영길

#### 나.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아이앤에스 법률  
사무소 (135-918)

### 2.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 가.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27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08. 8. 14.부터 파생상품 관련 분  
기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2008. 12.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  
통주식(이하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08. 12. 1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 나. 채권의 총액

2,743,392,402원

### 3.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 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2,743,392,402원(현금 1,371,696,201원 + 피고 기명주식 199,664주)

## 나.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 1) 권리실행금액

권리실행금액은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2,743,392,402원 전액이며, 권리 실행금액 중 1/2은 현금 1,371,696,201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나머지 1/2은 피고 기명주식 199,664주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행하였음.

현재 현금 1,371,696,201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공탁되어 있고, 주식 199,664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증권계좌(삼성증권 5445-5105, 계좌주: 조영길)에 각 보관되어 있음.

### 2) 분배할 금액

가) 현금 : 권리실행된 현금 1,371,696,201원에서 소송비용, 현금으로 지급될 변호사 보수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위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권리실행일로부터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 까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1,086,478,251원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1,371,696,201원 - (소송비용 10,878,710원 + 변호사 보수 274,339,240원)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나) 주식 : 권리실행된 주식 199,664주에서 주식으로 지급될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주식

159,732주(= 199,664주 - 변호사 보수 39,932주)

### 3) 권리실행금액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

권리실행금액 중 현금 1,371,696,201원에 대하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할 금액에 산입함 (증권사 약관 규정에 따라 주식 199,664주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없음).

###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 가. 소송비용

10,878,710원

| 지급날짜       | 금액(원)      | 상세내역     |
|------------|------------|----------|
| 2009-04-13 | 4,004,550  | 인지대, 송달료 |
| 2009-04-27 | 2,475,000  | 신문공고료    |
| 2009-07-16 | 330,200    | 인지대, 송달료 |
| 2010-02-11 | 3,300,000  | 신문공고료    |
| 2010-02-12 | 768,960    | 우송료      |
| 합계         | 10,878,710 |          |

#### 나. 변호사 보수

##### 1) 보수액

548,678,480원(= 2,743,392,402원 × 0.2)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1심에서 성공시 20%, 2심에서 성공시 25%, 3심에서 성공시 30%로 약정되어 있는바,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금

2,743,392,402원으로 화해가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20%가 변호사 보수에 해당됨.

## 2) 지급방법

위 금원 중 1/2인 274,339,240원(= 548,678,480원 ÷ 2)은 현금으로, 나머지 1/2인 273,339,240원에 해당하는 보수는 피고 주식 39,932주(= 274,339,240원 ÷ 6,870원)로 지급함(1주의 가액은 화해내용에 따라 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을 기준으로 함).

## 다. 분배비용

약 90,898,250원(= 분배관리인 보수 50,000,000원 + 분배계획안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7,410,130원 + 권리확인 개별 통지 우편 비용 약 4,188,120원 + 현금 계좌이체 수수료 약 5,550,000원+ 주식 계좌이체 수수료 약 3,700,000원 +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약 50,000원 + 공인회계사의 보수 약 20,000,000원)

단, 분배비용(분배관리인 보수를 포함)은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분배관리인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배관리인이 이를 부담하고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함.

## 5. 분배의 기준과 방법

### 가. 총설

각 구성원에 대한 분배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

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금과 주식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주식の場合)과 다.항(현금의 경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주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피고 주식의 수는 159,732주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임.

다만,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피고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1주당 6,870원을 기준으로 하고, 1원 미만은 절사함).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은 "법원이나 분배관리인에 의하여 권리확인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한 경우)" 또는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손해액(구성원이 권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을 의미하며,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은 각 구성원의 손해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 다. 현금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분배받을 현금의 액수는 [(1,371,696,201원 - (소송비용 10,878,710원 + 변호사 보수 274,339,240원 + 각 구성원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될 현금 총액) + 1,371,696,201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 /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 해당 구성원이 단주로 인해 지급받을 현금액]임.

## 6. 권리신고의 기간·장소 및 방법

### 가. 권리신고의 기간

법원의 분배계획안 인가결정의 공고일부터 2개월간(2개월 안에 권리신고서가 분배관리인에게 도달하여야 함)

### 나. 권리신고의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 19층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135-918)

### 다. 권리신고의 방법

별지 권리신고서 양식에 따라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권리신고의 장소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신고함(2008. 8. 14. ~ 2009. 8. 14. 피고 주식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함).

※ 권리신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권리확인방법

### 가. 권리확인 통지 일시 및 방법

권리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구성원과 피고에게 통지함.

### 나. 권리확인에 대한 이의 방법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신고인 또는 피고는 권리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제 9 민사부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음.

## 8.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 가. 분배금의 수령기간

권리확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간

### 나. 분배금의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 1) 현금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이체

#### 2) 주식

분배관리인이 구성원이 권리신고서에 기재한 증권회사 증권계좌번호로  
주식 계좌이체

# 권리신고서

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 1. 권리신고인의 인적사항

가. 권리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나. 권리신고인의 주소

1) 주소

2) 전자우편 주소

다.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담당자 성명 표시) , 팩스번호

라. 휴대전화번호<sup>1)</sup>

※ 신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팩스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1)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분배절차 진행상황이 통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권리신고의 내용

가. 피고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sup>2)</sup>

나. 손해액

(                      )원

※ 안내문에 첨부된 손해액 내역 및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가. 현금(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나. 주식(증권회사명, 증권계좌번호)

## 4. 권리확인통지 방법 (통지받고 싶은 방법을 택일하여 ○ 표시)

| 주소로 우편 송달 | 전자우편 통지  |
|-----------|----------|
| <br><br>  | <br><br> |

2010.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 분배관리인 귀중

2) 2008. 8. 14.~2009. 8. 14.까지의 기간 중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권리신고서에 각 계좌에 해당하는 증권사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모두 기재할 수도 있고, 각 계좌별로 각 권리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안 내 문

귀하의 손해액 내역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 1. 손해액 내역

분배관리인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아래 2항과 3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 및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산정한 귀하의 손해액 내역은 본 안내문의 별첨 1.의 '손해액 내역' 중 '4.손해액 총계'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 2. 손해액의 계산산식

가. 귀하의 손해액은 각 계좌별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을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였습니다.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sup>3)</sup> : 총원기간(2008. 8. 14. ~ 2008. 12. 19., 이하 동일)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매도기간(2008. 12. 20. ~ 2009. 8. 14., 이하 동일)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중에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

3)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1)처분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처분손해가 아니라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sup>4)</sup>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x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피고 회사의 2009. 8. 14.자 코스닥시장 거래종가인 6,870원 x 2009. 8. 14. 24:0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나. 총원기간 중에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각 매수시점별 취득가격 x 취득량)의 합<sup>5)</sup> / 총매수량<sup>6)</sup>

다. 매도기간 중 주식매도가액 = (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sup>7)</sup>)<sup>8)</sup>의 합. 단, 각 처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라. 별첨 1의 손해액 내역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별첨 2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손해액 계산의 전제

가. 총원기간 중에 순매수한 주식수는 총원기간에 취득한 주식수에서 총원기간에 처분한 주식수를 뺀 값으로 하였습니다.

나. 총원기간 이후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 주식부터 순차로 처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4) 첨부 '손해액 내역' 중 '3.2)보유손해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보유손해가 아니라 보유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총원기간 중 총매수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2)총매수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6) 총원기간 중 총매수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1.1)매수량'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7) 매도기간 중 매도량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1)매도량(2)'에 기재된 수량과 같습니다.

8) 매도기간 중 총매도가액을 의미하며, 첨부 '손해액 내역' 중 '2.2)총매도가액'에 기재된 금액과 같습니다.

다. 총원기간 중 취득한 주식의 처분 또는 보유 여부는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거래내역이 확인가능한 마지막 날인 2008. 8. 14.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보유주식에 관한 손해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거래소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 기간(2008. 12. 19.~2009. 8. 14.)의 마지막 날인 2009. 8. 14.의 피고회사 주식의 거래종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마. 종전에 매도기간의 시점이 2008. 12. 19.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정정공시를 한 것은 위 2008. 12. 19. 장마감 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008. 12. 20. 00:00부터 매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4.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

가. 귀하가 권리신고서에 기재할 손해액은 위 2항의 손해액 계산 산식과 3항의 손해액 계산의 전제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입니다.

나. 귀하는 피고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아 권리신고서에 첨부하게 되는 주식거래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 가 항 손해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겠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로서 실제 분배받게 되는 분배금의 액수(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와는 그 수액이 상이합니다.

라. 귀하로 하여금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이 아닌 위 가 항의 손해액을 권리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로 지급받을 분배금의 경우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연동하여 산정되도록 화해내용에서 정하고 있어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권리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신고 당시에는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 귀하가 손해액을 계산한 결과 분배관리인이 계산한 손해액 내역과 동일하여 분배관리인의 계산결과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도 분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총원기간 중 주식을 순매수한 내역이 있는 자 모두에게 분배계획안 및 본 안내문이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기간 중의 매도로 인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분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손해액 계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첨 1

※ 계좌정보

- 증권사명 : 우리투자
- 계좌번호 : 000-00-00000
- 성       명 : 홍길동

1. 2008.08.14 ~ 2008.12.19 (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 1) 매   수   량 : 1,000 주
- 2) 총   매수   가액 : 7,000,000 원
-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7,000 원
- 4) 매   도   량 (1) : 500 주
- 5) 순   매   수   량 : 500 주

2. 2008.12.20 ~ 2009.08.14 (매도기간)의 거래내역

- 1) 매   도   량 (2) : 200 주
- 2) 총   매도   가액 : 1,380,000 원
- 3) 평균매도단가 : 6,900 원
- 4) 매   수   잔   량 : 300 주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 1) 처분손해액 : 20,000 원
- 2) 보유손해액 : 3,900 원

4. 손   해   액   총   계 : 23,900 원

별첨 2

## 손해액 내역 항목별 설명서

### 1. 2008. 8. 14. ~ 2008. 12. 19.(총원기간)의 매수, 매도 거래내역

- 1) 매수량 : 2008. 8. 14. ~2008. 12. 19. 매수주식 수의 합
- 2) 총매수가액 : 2008. 8. 14. ~2008. 12. 19. 총매수가액총매수가액=(각 매수시점별 매수가격 x 매수량)의 합
- 3)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총매수가액 ÷ 매수량
- 4) 매도량(1) : 2008. 8. 14. ~2008. 12. 19. 매도주식 수의 합
- 5) 순매수량 = 매수량 - 매도량 (1)

### 2. 2008. 12. 20. ~ 2009. 8. 14.(매도기간)의 거래내역

- 1) 매도량(2) : 2008. 12. 20. ~ 2009. 8. 14. 매도주식 수의 합
-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으로 봄(즉,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은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한도로 함).
- 2) 총매도가액 : 2008. 12. 20. ~2009. 8.14. 총매도가액총매도가액=(각 매도시점별 매도가격 x 매도량)의 합
- ※ 매도기간 중의 매도량의 합이 총원기간 중의 순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8. 12. 20. 부터 각 매도시점별 매도량의 합이 순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매도가액을 순차적으로 더하여 총매도가액을 계산함.

3) 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총매도가액 ÷ 매도량(2)

4) 매수잔량 : 순매수량 - 매도량(2)

### 3. 처분손해액, 보유손해액 계산

1) 처분손해액<sup>9)</sup> = 매도량(2) ×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매도기간의  
평균매도단가)

※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2) 보유손해액<sup>10)</sup> = 매수잔량 × (총원기간의 평균매수단가 - 6,870원)

※ 보유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함.

### 4. 손해액 총계

손해액 총계 = 처분손해액 + 보유손해액

---

9)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처분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의 매도가액

10)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과 동일함. 보유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 (총원기간 중 매수한 주식의 주당 평균매수단가 - 6,870원) × {(총원기간 중 총 매수주식수 - 총원기간 중 총 매도주식수) - 매도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수}